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9
----------	------

발의연월일 : 2021. 11. 22.

발의의원 : 김정태 의원, 김보경 의원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 군수의 책무(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안 제3조~제4조)
- 다. 지도·감독 등(안 제5조~제6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대구광역시 달성군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 사업
2. 그 밖에 사회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